

대전지방법원 2022. 11. 15 선고 2021나11949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2. 11. 15 선고 2021나119498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가단1529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경

변론종결 2022. 9. 6.

판결선고 2022. 11. 15.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가단1529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C 사이의 2019. 7. 14.자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4, 5행의 ‘피고의 C에 대한’을 ‘C의 피고에 대한’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7행의 ‘피고가 C에게’를 ‘C가 피고에게’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8, 9행의 ‘부족하고,’를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치고, 제9행의 ‘오히려’부터 제12행까지의 부분을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순영, 판사 윤이진, 판사 안영화